

	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1		
		제정일	2010. 12. 13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1/4	관리 부서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칙 제78조(제 위원회)에 의거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 의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고 위원의 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위원 : 1명
2. 교직원위원 : 3명
3. 학생위원 : 4명
4. 전문가위원 : 1명
5. 동문위원 : 1명

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의원의 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선임 기준 : 교직원의 경우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및 외부인사(동문 포함) 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.

④ 자격요건 : 교원과 직원은 교원 및 직원 재직자로 하며, 학생은 대표성이 있는 재학생. 외부인사(동문 포함)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자로 한다.

⑤ 관계되는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·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.

1.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2.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
3.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4. 자기와 증언·감정·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
5.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·수사·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

⑥ 위원회의 심의·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,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⑧ 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단 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교무회의에 추천 요청한다.

1. 법인위원 : 법인에서 추천한다.
2. 교직원 : 교무회의에서 추천한다

	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1	
		제정일	2010. 12. 13.	
		개정일	2020. 12. 31.	
		페이지	2/4	관리 부서 기획처

3. 학생 : 학생회에서 추천한다.
4. 동문 : 동문회에서 추천한다.
5. 전문가위원 : 공개모집 또는 교무회의에서 추천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(단 학생대표 중 총학생회 회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, 그 외 학생대표 임기종료일은 학년 종료일로 한다-학생위원 임기 1년)
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등록금 책정과 예·결산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 측에 요청할 수 있고, 대학 측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 및 홈페이지에 사전공개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, 위원회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.

제7조(사무의 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제8조(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	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1		
		제정일	2010. 12. 13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기획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11		
		제정일	2010. 12. 13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4/4	관리 부서	기획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